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21/2564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리트 추가 혜택(Merit-based incentive) 내용의 개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리트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내용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에 따라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유치법 제16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1/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시하는 바이다.

1. 2017년 3월 14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60호 메리트에 따른 추가 권리 및 혜택(Merit-based incentive)에 관한 변경 내용은 폐지한다.
2. 투자유치 정책과 조건에 관한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서 9.2.1항의 내용은 폐지하며,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9.2.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9.2.1.1 다음의 투자금 또는 지출액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1) 인하우스 R&D, 태국 내 아웃소싱 R&D, 해외 기관과의 공동 R&D 등을 포함한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연구 및 개발
- (2)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태국의 기술 및 인력 개발 기금, 교육 기관, 전문 훈련센터,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지원
- (3) 과학과 기술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기량, 기술 혁신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 마련
예) 일-학습 통합프로그램(WiL, Work-Integrated Learning), 이원적 직업 교육 훈련제도(Dual Vocational Education) 또는 투자청에서 승인한 산학협력 교육과정(Cooperative Education)
- (4) 태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IP(지적재산권) 취득 및/또는 라이선스 비용 지출
- (5) 첨단기술 훈련
- (6) 태국인이 등록 자본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원료 또는 부품의 현지 공급 업체를 개발하여 첨단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 (7) 투자청이 승인한 바에 따라, 인하우스 또는 태국 내 아웃소싱을 통한 제품 및 포장 설계

세부사항은 투자청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른다.

추가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1)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매출액의 1% 이상이거나 2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매출액의 2% 이상이거나 4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2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3% 이상이거나 6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3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A1과 A2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이 방안에 따라 법인세 면제 기간이 추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 면제에 대한 추가 한도(cap)는 다음과 같다.

- (1) 9.2.1.1(1)항에 따른 투자액과 지출액의 300퍼센트로 계산
- (2) 9.2.1.1(3-7)항에 따른 투자액과 지출액의 200퍼센트로 계산
- (3) 9.2.1.1(2)항에 따른 투자액과 지출액의 100퍼센트로 계산

9.2.1.2 인하우스 R&D, 태국 내 아웃소싱 R&D, 해외 기관과의 공동 R&D 등을 포함한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 또는 지출액의 경우, 추가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매출액의 1% 이상이거나 2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1년이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매출액의 2% 이상이거나 4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2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3% 이상이거나 6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3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4% 이상이거나 8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4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프로젝트 최초 3년간 총수입의 5% 이상이거나 10억 바트 이상인 경우(둘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5년 더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첨부된 활동 리스트에서 기술 및 혁신에 대한 R&D 투자 또는 지출이 발생하는 활동과 9.2.1.2항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활동(메리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닌 활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된 조건의 활동은 제외)은 첨단 기술과 혁신을 채택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해당 활동은 한도 없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2.1.3 9.2.1.1항과 9.2.1.2항의 경우, 투자액 또는 지출액이 최초 3년간 총매출의 1퍼센트 미만이자 2억바트 미만이라면, 법인세에 대한 추가 한도는 9.2.1.1항의 투자액 또는 지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법인세 면제 기간은 추가로 받아볼 수 없다.

9.2.1.4 법인세 면제의 총기간이 8년을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35조(1)에 따라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볼 수 없다.

9.2.1.5 촉진 활동의 조건에 R&D에 대한 최소 투자 비율 또는 지출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R&D를 해야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경우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9.2.1.1 및 9.2.1.2항의 기술 및 혁신의 R&D에 관한 추가 투자액 또는 지출액의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이 고시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2021년 9월 16일

쁘라윛 짬오차 장군(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위원회 의장